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통 보

제 목 기능보강사업 선금 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중구, 동구

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」 제6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르면 선금 지급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 계약과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경우에 한하며, 또한 선금지급 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, 계약금액의 70%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그런데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○○○노인요양원에서는 아래 [표]와 같이 치매전담실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 이행기간이 29일로서 계약상대자인 (주)○○건설로부터 선금신청당시 잔여이행기간이 25일로서 선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계약금액의 50%(27,500,000원)를 지급하는 등 선금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, ○○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선금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할 수 있음에도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데도 선금을 지급하였고, 또한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.

[표] 선금 지급 부적정 현황

<단위 : 천원>

시설명	공사명	계약일	공사기간	계약 금액	선금 신청 및 지급			
					신청일	신청금액	지급일	지급금액
○○아동보 호전문기관	상담실 등 인테리어공사	2015.07.06	2015.07.07.~ 2015.07.24.	21,967	2015.07.06	10,000	2016.07.08	10,000
○○○노 인요양원	치매전담실 공사	2016.10.14	2016.10.21.~ 2016.11.18.	58,613	2016.10.25	27,500	2016.10.25	27,500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

[통보]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시고, 기능보강 사업 추진시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동구청장은

[통보]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시고, 기능보강 사업 추진시 잔여 이행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 선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